

자산보관계약 변경계약서

주식회사 코리아벨류그로스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갑”)와 주식회사 국민은행(이하 “을”)은 “갑”의 보유자산의 보관과 관련하여 2021년 10월 6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(이하 “원계약”)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산보관계약 변경계약(이하 “본 변경계약”)을 체결한다.

제1조 용어의 정의 및 우선 순위

- 1.1 정의: 본 변경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본 변경계약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계약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.
- 1.2 우선 순위: 본 변경계약에서 규정된 내용은 원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.
- 1.3 효력: 변경된 조항은 본 변경계약 체결일부터 효력을 가지며, 본 변경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제외한 원계약의 모든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.

제2조 보수의 변경

“갑”과 “을”은 원계약 제22조 (보수)를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.

변경 전	변경 전
<p><u>제22조(보수)</u></p> <p>① “갑”은 “을”에 대하여 자산보관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.</p> <p>② 보수는 매 분기 단위로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. 보수는 당해 분기말 기준 “갑”이 보유하는 총 자산에 대해 연 0.25/1,000에 해당하는 금액(부가세 별도)으로 한다. 다만, 자산보관업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수는 1기 90일을 기준으로 “을”이 자산보관업무를 실제로 이행하는 날 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, 최초 분기의 보수는 “갑”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계산하기로 한다.</p>	<p><u>제22조(보수)</u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	<p>③ (신설) 본 조 ②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유일하게 소유하는 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한 결산기와 그 이후의 청산종결등기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보수는 총 4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 하며, 위탁자가 유일하게 소유하는 부동산 처분일 이전까지 청구하여 15영업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.</p>
--	---

제3조 변경계약 체결의 승인

당사자들은 본 변경계약의 체결 이전에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변경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내부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.
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변경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2년 1월 11일



“갑”

회사명: (주) 코리아벨류그로스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
 주 소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, 17층(서소문동, 태평로빌딩)
 대표자: 대표이사 이 대 운



“을”

회사명: 주식회사 국민은행
 주 소: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(여의도동)
 대표자: 은행장 허 인
 위 지배인 수탁사업부장 심 태 복

